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
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와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
리방안 수립 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
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
이 문화시설에 포함되고,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이 공공필요성이 인정
되는 체육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17조의2제1항
및 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

니하는 공장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
(안 제61조제2항)

다. 개발진흥지구 내의 건폐율 완화범위를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안 제64조제2항제2호)

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안 제64조제11항)

마.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안 제64조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체육시설, 도서관”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2호 중 “체육시설, 도서관”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한다.

제34조제2항제6호 중 “유스호스텔”을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한다.

제35조제6호 중 “유스호스텔”을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제8호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제6호 중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을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제6호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9조제3항제8호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8호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64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 제8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64조제1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6호”를 “영 제84조제6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 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 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 조제1항의 기반시설 중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공공청 사, 문화시설, <u>체육시설</u> , 도서 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 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및 방 재시설을 말한다.	제1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 화적용) ① ----- ----- ----- ----- ----- ----- <u>공공필요성이</u> <u>인정되는 체육시설</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생략)	제17조의3(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주	2. -----

차장, 광장, 녹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로 할 것

3. (생략)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생
략)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
축물과 영 별표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
텔 제외)

7. ~ 14. (생략)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공공필요성이 인
정되는 체육시설-----

3.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 -----

7. ~ 14. (현행과 같음)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5. (현행과 같음)

6. -----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7. ~ 15. (생략)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생략)

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3. ~ 6. (생략)

제4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영별표 1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별표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 13. (생략)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 -----

7.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3.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9. ~ 13. (현행과 같음)

제4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 16. (생략)

제4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5. (현행과 같음)

6. -----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

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

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

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

정한다]

7. (현행과 같음)

8. -----

-----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한다)

9. ~ 16. (현행과 같음)

제5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 13. (생 략)

제59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생 략)

③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 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 19. (생 략)

④ (생 략)

제60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자연

제5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7. ~ 13. (현행과 같음)

제59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 ~ 1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

취락지구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 12. (생 략)
- ② (생 략)

제6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2. (생 략)
- <신 설>

-----.

1. ~ 7. (현행과 같음)
8. -----
-----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생략)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 6. (생략)

③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

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4항-----

-----.

1. (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 6.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5항-----

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한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
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로 한
다.

④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
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
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
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
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
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

--.

④ 영 제84조제6항-----

-----.

1. (현행과 같음)

⑤ ----- 영 제84
조제6항제3호-----

-----.

⑥ ----- 영 제84
조제6항제5호-----

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생략)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⑩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

-----.

⑦ 영 제84조제7항-----

-----.

⑧ (현행과 같음)

⑨ ----- 영 제84조제6항제4호-----

-----.

⑩ 영 제84조제9항-----

폐율은 별표 5에 따른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⑪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 제84

다) 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
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
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
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
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⑬ (생략)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

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⑬ (현행과 같음)

⑭ ----- 영 제84
조제6항제6호-----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set consists of two parallel dashed lines, creating ten equal-sized rectangular sections for writing or draw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